

# 소나무류의 대상수종

## □ 법적근거 :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제2호

- “소나무류”라 함은 소나무 및 해송과 그 밖에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말한다.
  - ※ ‘그 밖에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’이라 함은 소나무, 해송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재선충병에 자연 감염되는 수종을 말함
  - ※ 소나무류에 해당되는 수종은 식물 분류단위의 하나인 종(species)을 기준으로 분류함

## □ 대상수종 : 소나무, 해송, 잣나무

- 2006. 12. 21. 경기도 광주시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자연 감염된 것이 최초 발견됨에 따라 소나무류의 대상수종에 잣나무를 포함하는 「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」을 개정하여 시행('06.12.26)
  - “소나무류”라 함은 소나무·해송·잣나무를 말한다.
- 소나무(*Pinus densiflora*), 해송(*Pinus thunbergii*), 잣나무(*Pinus koraiensis*)와 같은 종(species)에 포함되는 품종·변종 등은 포함
  - 금강소나무(*P. densiflora* for. *erecta*), 처진소나무(*P. densiflora* for. *pendula*), 반송(*P. densiflora* for. *multicaulis*), 황금소나무(*P. densiflora* var. *aurea*) 등

## □ 제외수종 : 백송, 솔송나무, 스트로브잣나무, 낙엽송 등

- 소나무, 해송, 잣나무와 종(species)이 다른 모든 수종
  - ※ 제외수종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자연 감염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수종에 포함